문서번호	생활보건과-5648
결재일자	2016.3.9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

			시 민
주무관	생활보건팀장	생활보건과장	시민건강국장
협 조			

## I-SEOUL-U

## 2016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

2016.3.

시민건강국

(생활보건과)



#### ₩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*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* 

구	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해당 없음	비고
시 참	민 여	• 시민 의견 반영 및 시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	
전 문 자	가 문	• <b>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</b> 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	
갈	등	•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	
사 회 약 배	적 자 려	<ul><li>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</li><li>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</li></ul>		
선 거	법	•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	
안	전	•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	
타 기	관	• <b>타 기관 협의·협력</b> 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	25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
<u>io</u>	보	<ul><li>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li><li>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</li></ul>		
바 우 리	른 말	<ul> <li>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</li> <li>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</li> </ul>		

# 목 차

Ι	추진근거 및 관리체계	1
II	추진방향	2
Ш	현 황	2
IV	2015년 사업실적 및 개선방향	5
V	2016년 사업목표	9
IV	세부추진계획	9
	1.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	9
	2.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	11
	3. 시민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	12
	4. 월별 추진일정	13
VII	2016년 법령 시행 사항	13
VIII	행정사항	14

## 2016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

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서비스 수준 평가,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### I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

- 추진근거
  -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(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), 제9조(보고 및 출입·검사),
     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
  -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위생처리업의 위생 관리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62호)
  -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(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-159호)
- 관리체계

#### 서울시 생활보건과

- 종 합 계 획 수 립 및 자치구 시달
- -분기별 실적관리 및사업평가
- 타사업연계한통합관리추진 (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측정관리)

#### 보 건 소

-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
- 분기별 실적보고
- 업소 별 지도점검
- 공중위생업소사비스평사/행밀공표
- 업소자율점검계획수립및실적관리

#### 업소(업주)

- -자율점검실시 및 결과보고
-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점검 시 적극 협조
- 업소 위생관리 기준 준수

## Ⅱ 추진방향

- 민·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
- 시민(명예공중위생감시원)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
- 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
-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
-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원인별 개선방법 안내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

## Ⅲ 현 황

■ 공중위생업소

(2016.1.1. 기준, 단위: 개소)

합 계	숙박업	목욕장업	이용업	미용업	세탁업	위생관리 용 역 업	위생용품 제조업 등
38,589	3,323	1,075	2,903	22,433	5,687	3,117	51

#### ■ 공중이용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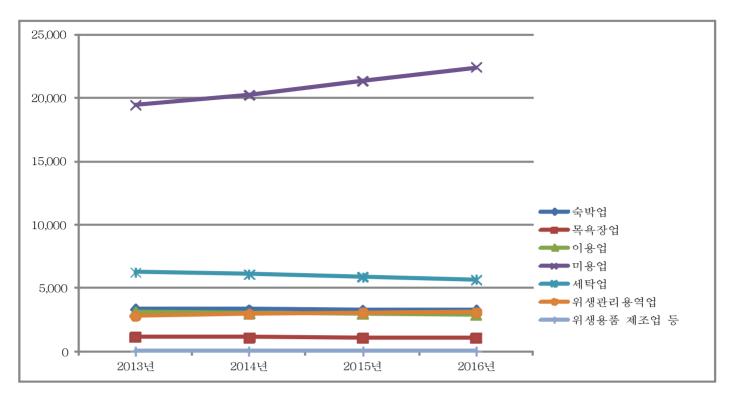
(2016.1.1. 기준, 단위: 개소)

합 계		복합건축물 (2,000㎡이상)	공연장 (1,000석 이상)		혼인예식장 (2,000㎡이상)	
7,970	1,629	6,122	33	99	74	13

### ■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(최근 4년간)

(단위 : 개소)

연도	합계	숙박업	목욕장업	이용업	미용업	세탁업	위생관리용 역 업	위생 <del>용품</del> 제조업 등
'16	38,589	3,323	1,075	2,903	22,433	5,687	3,117	51
<b>'</b> 15	37,837	3,323	1,100	2,992	21,379	5,912	3,079	52
'14	36,886	3,338	1,134	3,033	20,265	6,101	2,963	52
'13	36,345	3,376	1,180	3,154	19,491	6,267	2,822	55



〈 최근 4년간 업종별 변화추이 〉

#### ▲ 증가업종 : 미용업, 위생관리용역업

- 미용업 :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미용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및 고객들의
  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(일반, 피부, 손・발톱 등)
- 위생관리용역업 :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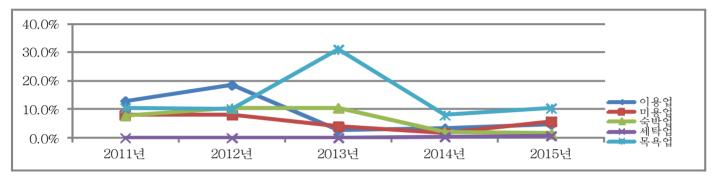
### ▼ 감소업종 : 목욕, 이용, 세탁 등

- 목욕장 : 대형화(찜질방 등)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, 가정 내 목욕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 감소
- 이용업 :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와 이용실에 비해 취약하고 노후된시설로 인한 이용 남성 감소
- 세탁소 : 대형화, 프렌차이즈 영업 확산,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

### ■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·관합동점검 현황

(단위 : 개소)

업종	총	계	이	용	미	용	숙	박	세	탁	목	욕
연도	점검	위반	점검	위반	점검	위반	점검	위반	점검	위반	점검	위반
2015	1,427	52	169	8	357	21	526	8	250	2	125	13
2014	2,358	50	180	6	1,446	26	356	7	251	1	125	10
2013	2,257	114	259	7	1,528	62	133	14	237	0	100	31
2012	748	61	27	5	372	30	96	10	96	0	157	16
2011	893	69	108	14	372	30	192	15	126	0	95	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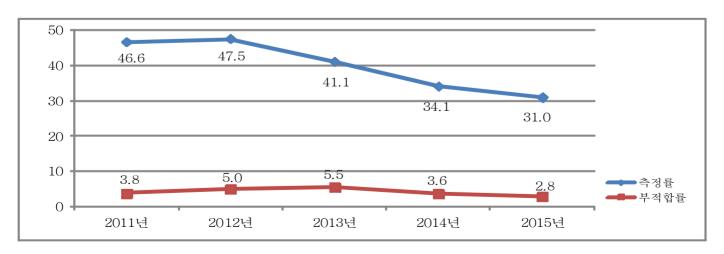


〈 연도별 위반율 〉

### ■ 최근 5년간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

(단위: 개소, %)

연도 측정	총계	2011	2012	2013	2014	2015
대상시설	37,452	7,238	7,402	7,409	7,554	7,849
측정시설	14,944	3,374	3,518	3,045	2,575	2,432
(측정률)	(39.9%)	(46.6%)	(47.5%)	(41.1%)	(34.1%)	(31.0%)
부적합시설	633	128	177	168	93	67
(부적합률)	(4.2%)	(3.8%)	(5.0%)	(5.5%)	(3.6%)	(2.8%)



### Ⅳ 2015년 사업실적 및 개선방향

### 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

'15년 민·관합동점검 : 연8회(분기별 2회) 1,427개소 점검/52개소 위반

● 업종별 점검실적

(단위 : 개소)

총	계	이용업	미용업	숙박업	세탁업	목욕장업
대상업소	34,930	2,933	21,769	3,321	5,816	1,091
점검업소	1,427	169	357	526	250	125
위반업소	52	8	21	8	2	13
위 반 율	3.6%	4.7%	5.9%	1.5%	0.8%	10.4%

#### ● 위반내용

- 시설·설비기준 위반(이용업소 칸막이 설치, 소독장비 미비치 등) 17건
- 위생관리 기준 위반(영업신고증 원본 미게시, 옥외가격표시 미게시 등) 20건
- 목욕장 및 숙박업소의 수질기준 위반(욕조수, 먹는물) 12건
- 페업신고 미이행 3건

#### ATP 측정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

- 935건 측정(가위·빗, 정수기코크, 정수기컵, 매트·베게·소독기 내부 등)
- 기준 초과(400 이상) 220건(기준초과율 23.5%)
- ※ 청결 관련 법규정이 없으나 ATP 기계로 측정하여 기준초과 업소에 대해 세척 후 재측정하고 위생관리 행정지도함

#### 위생처리업·위생용품제조업 수거·점검

위생처리업·위생용품제조업 점검실적 :(52개소 점검/1개소 위반)

(단위: 개소 건)

구 분	<b>계</b> 위생처리?		위생용품	<b>풍제조업</b>
丁 世	Al	기생시다함	세척제제조업	기타위생용품제조업
대상업소	52개소	28	4	20
점검업소	52개소	28	4	20
위반건수	1건	1	0	0

- 위반내용 : 위생처리업 1건(세균수 초과)

#### 유통제품 점검실적 : 총317건 수거검사(위반사항 없음)

(단위: 건)

합 계	세척제	1회용 숟가락, 젓가락	1회용 이쑤시개	1회용 컵	위생종이류 (기름종이, 팩 등)
	131	41	56	42	7
317건	헹굼보조제	1회용 위생종이 (냅킨, 물종이류)	일회용포크, 플라스틱컵	기타위생용품 (호일)	
	1	14	25	0	

###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

■ 평가업소 : 이·미용업 23.452개소 (평가실시율 93%)

	구 분	<b>총 계</b> (단위: 개소)	이용업	미용업 (일반)	미용업 (피부)	미 용 업 (손톱·발톱)	미용업 (종합)
대	상 업소수(A)	25,336	2,903	15,497	3,321	680	2,935
평	가 업소수(B)	23,452	2,750	14,421	2,918	589	2,774
평	90점 이상 (녹색등급)	<b>10,466</b> (44.6%)	1,287	6,465	1,339	319	1,056
평가등급	80점 ~ 89점 <b>(황색등급)</b>	<b>3,005</b> (12.8%)	492	1,907	332	69	205
급	80점 미만 (백색등급)	<b>9,981</b> (42.6%)	971	6,049	1,247	201	1,513
평	가실시율(B/A)	92.6%	96.6%	93.1%	87.9 %	86.6%	94.5%

<sup>※</sup>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격년으로 실시

### 3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

**조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: 2.401개소 (부적합 67개소)** 

(단위 : 개소)

총	계	<b>업무시설</b> (3,000㎡이상)	<mark>복합건축물</mark> (2,000m²이상)	<b>공연장</b> (1,000석 이상)	<b>학 원</b> (2,000m²이상)	<b>혼인예식장</b> (2,000m²이상)	<b>실내체육시설</b> (1,000석 이상)
대상시설	7,849	1,591	6,034	34	98	75	17
측정시설	2,401	637	1,673	11	52	8	20
부적합	67	17	47	0	0	1	2

#### ● 부적합 내용

- 1개 항목 부적합(66): 미세먼지 30개소, 이산화탄소 15개소, 포름알데히드 21개소

- 2개 이상 부적합(1) : 이산화탄소+포름알데히드 1개소

■ 법적 미규제 기타시설 : 641개소(부적합 47개소)

(단위: 개소)

33774	ネコ	ㅂ저치	부적합항목						
시설구분 (단위: 개소)	측정 시설	부적합 시설	포름 알데히드	미세 먼지	$CO_2$	미세+ CO <sub>2</sub>	포알+ CO <sub>2</sub>	미세+ 포알	
총계	641	47	5	30	11	0	0	1	
소규모어린이집	418	22	4	7	11				
동주민센터	26	0							
체력단련장	34	8		7				1	
목욕장	24	4		4					
이미용업	3	0							
노인시설(경로당)	87	4	1	3					
청소년시설	13	7		7					
장애인시설	3	0							
키즈키페·오락실	7	2		2					
고시원	20	0							
지역아동센터	3	0							
기 타	3	0							

▶ 부적합 내용 : 측정 641개소 / 부적합 47개소

- 1개 항목 부적합(46) : 이산화탄소 11개소, 포름알데히드 5개소, 미세먼지 30개소

- 2개 이상 부적합(1): 미세먼지+포름알데히드 1개소

※ 소규모 어린이집(연면적430㎡미만) 418개소 측정 중 22개소 부적합(부적합율 5.3%)

- 이산화탄소 11개소, 포름알데히드 4, 미세먼지 7

###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

■ 위 촉 : **285명**(여 204명, 남 81명), 임기 2년('15.7월 ~ '17.6월)

🔳 단체 상해보험 가입 :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

■ 직무교육 실시 :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(역할) 등 교육

● 정기교육 : 9회(직무교육 1,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 교육 8)

◆ 수시교육 : 296회(자치구 자체계획 점검 사전교육)

🔲 민관합동점검 실시

● 서울시 주관 : 1,427개소

● 자치구 주관 : 23,951개소

## 전년도 사업평가에 근거한 개선방향

5

구분	사 업 평 가
성공 요인	<ul> <li>○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도점검</li> <li>- 서울시: 계획수립및 점검지역 선정</li> <li>- 자치구: 수거·점검및 위반업소 행정처분(사후관리)</li> <li>- 검사기관: 보건환경연구원(위생용품 등 검사), 자치구 의약과(수질검사)</li> <li>○ 민·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(명예공중위생감시원)</li> <li>○ 위생지도에 대한 가시적 측정결과 제시</li> <li>-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를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 유도</li> </ul>
부진 요인	<ul> <li>○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 의지 부족</li> <li>○ 근거법(공중위생관리법 등)미비로 인한 효율적 업무추진 곤란</li> <li>-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</li> <li>- 폐업 미신고 및 멸실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조항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발생</li> </ul>
개선 방향	<ul> <li>○ 영세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ATP 측정 확대실시로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 유도</li> <li>○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</li> <li>○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'공중이용시설'을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의 '다중이용시설'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함 (2015.12.22. 법률 개정 → 2016.12.23. 시행)</li> <li>○ 행정청의 직권말소 신설 등 「공중위생관리법」개정 (2016.2.3. 법률 개정 → 2016.8.4. 시행)</li> </ul>

## Ⅴ 2016년 사업목표

사업목표명	목 표	비고
공중위생업소 민·관합동 지도점검	1,250개 <b>소 이상</b> (자치구별 50개소 점검)	
공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	2,000개 <b>소</b> (자치구별 80개소)	'16.12.23 환경부에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
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초과율	4.5% 이하	의하여 통합관리예정
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	100%(10,085개소)	'16년 대상업종 : 목욕·숙박업·세탁업

## Ⅵ 세부추진계획

###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

사 업 명	민·관합동 구간교차 점검							
사업목표	공중위생업소 1,250개소 점검(자치구별 50개소 점검)							
	<ul> <li>○ 점검대상: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 등</li> <li>○ 점검횟수: 연8회(분기별 2회) 이상</li> <li>○ 점 검 반: 25조 75명(각 조별 3명: 공무원 1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)</li> <li>○ 점검방법: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(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)</li> <li>○ 점검내용: 시설 및 설비기준,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, 기기류 오염도(ATP) 측정 등</li> <li>-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</li> </ul>							
10110	업 종	중점 점검사항	비고					
사업내용 -	숙박업	-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-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- ATP 측정 : 냉·온수기,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	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수질검사					
	세탁업	<ul><li>회수건조기 설치 여부</li><li>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</li></ul>						
	목욕장업	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수질검사, 욕조수수거검사						

	이용업	-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- 영업장 면적 66㎡ 업소의 「옥외가격표시제」(최종 지불요금 3개이상) 게시(부착) 여부 - ATP 측정: 빗, 가위, 면도기,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					
사업내용	미용업						
	위생관리용역업 -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·요령 교육여부 -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						
	<ul><li>측정대상</li><li>측정방법</li><li>권장치(4</li></ul>	Γ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: 정수기와 냉·온수기 코크, 이·미용 기구, 베게·베드 및 결과조치 00RLU) 초과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					
소요예산	47,690천원						
사업명	위생처리업, 위생용품제조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						
사업목표	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52개소 점검(100% 점검)						
사업내용	<ul> <li>○ 점검대상 : 52개소(위생처리업 28개소, 위생용품제조업 24개소)</li> <li>- 위생처리업 : 물수건을 살균·소독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·공급하는 영업</li> <li>- 세척제제조업 :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·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·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를 제조하는 영업</li> <li>- 기타위생용품제조업 : 일화용의 물컵·숟가락· 젓가락·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를 제조하는 영업</li> <li>○ 점 검 반 : 25조 50명(각 조별 2명 : 공무원 1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)</li> <li>○ 점검방법 : 자치구 관내업소 자체점검</li> <li>○ 점검내용 : 시설 및 설비기준, 규격 및 표시기준 적정여부, 제품 수거검사</li> <li>○ 검사기관 :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</li> <li>○ 기 타 :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</li> </ul>						
소요예산	비예산 (시중 유통제품 구입비는 자치구 예산)						

사업명	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					
사업목표	공중위생 전체업소(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 등)					
사업내용	○ 점검대상 : 공중위생업소         ○ 점검주기 : 연4회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        ○ 점검방법 :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수기작성(우편, 이메일, 팩스 등)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       ※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        ○ 시행방법         《제1단계》         영업자 자율점검        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·제출(구청 배부)         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(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)        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(행정처분 병행)					
소요예산	비예산					
기타	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					
사업내용	<ul> <li>○ 위촉인원 : 285명, 임기 2년('15년 7월 ~ '17년 6월)</li> <li>○ 단체상해보험 가입 : 안전사고 대비</li> <li>○ 직무교육 : 정기 직무교육 연1회,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8회</li> </ul>					
소요예산	7,700천원					

##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

사업명	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					
사업목표	목욕·숙박·세탁업소 100%					
사업내용	<ul> <li>○ 평가대상: 10,085개소(목욕 1,075 / 숙박 3,323 / 세탁 5,687)</li> <li>○ 평가 반: 25개조 50명(각 조별 2명: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)</li> <li>○ 평가방법: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방문하여 현지조사</li> <li>○ 평가내용: 업종별 26~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(녹색, 황색, 백색)</li> <li>○ 결과공표: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(홈페이지) 등에 공표</li> </ul>					
소요예산	비예산					

## 3 시민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

사업명	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								
사업목표	공중이용시설 2,000개소 실내공기질 측정(대상업소의 25% 이상, 구별 80개소)								
	<ul> <li>○ 측정대상 : 업무시설(3,000㎡이상), 복합건축물(2,000㎡이상), 공연장(1,000석이상), 학원(2,000㎡이상), 혼인예식장(2,000㎡이상), 실내체육시설(1,000석이상)</li> <li>○ 측 정 반 : 25조 50명(각 조별 2명 : 공무원 1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)</li> <li>○ 측정항목 : 4개 항목</li> </ul>								
	항 목	미세먼지	CO	$CO_2$	포름알데히드				
	기준치 15	50μg/m³이하	25ppm이하	1,000ppm이하	120μg/m³이하				
사업내용	2차 재측정 (부적합시설) 소(구별 12개소 이상)								
소요예산	비예산								
기 타	실내공기질 측정정	J비 정도검/	나 및 홍보물 저	작					
사업내용	<ul> <li>○ 측정장비 정도검사 : AIRWELL PLUS 5대</li> <li>- 검사대상(형식승인) : 이산화탄소</li> <li>- 검사기준 : 연 1회</li> <li>- 검사기관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</li> <li>○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</li> <li>- 2,500부 제작(자치구별 약100부씩 배부)</li> <li>- 내용 : 오염물질의 종류, 발생원인 및 관리방법 등</li> </ul>								
소요예산	12,500천원								

### 4 월별 추진일정

즈이 시어 기교		연차별 추진 일정											
	주요 사업 지표		2	3	4	5	6	7	8	9	10	11	12
	민·관합동 구간교차 점검												
공중위생업소 이 새 겨니 스	위생처리업 등 수거검사												
위생서비스 관리	영업자 자율점검												
	명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및 직무교육												
고즈이용시서	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												
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	법적 미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												
	장비 정도검사 및 홍보물 제작 배부												
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													

## Ⅷ 2016년 법령 시행 사항

-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관련 내용 삭제(향후 환경부에서 통합관리 예정)
- 이·미용사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
- 위생관리용역업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
-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
- 행정청의 직권말소 신설
-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, 그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함
- 이·미용사의 업무보조범위 규정
-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신설
- 과징금 미납 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-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
- 법 위반 사실 공표 신설
- 폐업신고 미이행 시 부과된 과태료 삭제

## ₩ 행정사항

🔲 소요예산 : 67,890천원

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	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					
55,390	12,500					

-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(자치구)
  -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: 3월 25일까지(금)
  - 분기별 실적보고 : 실내공기질 관심적, 위생업소 자치구 지도점검 실적(지율점검 포함)
    - 보고기한 : 4월·7월·10월·1월 매 첫째주까지
    - 제출서식 : 추후 별도 통지예정
  -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·배부 및 홍보
  - 새올행정시스템 등록관리
    - 등록관리
      - ·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(신규, 변경신고, 휴업, 폐업, 지위승계신고 등)
      - ·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
      - · 행정처분 결과(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)
    -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
    - · 보고대상 :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
    - · 보고주기 : 매분기(익월 5일이내)
    - · 보고방법 : 새올행정시스템 전송 보고
    - · 보고내용 : 업소수, 위반건수, 행정처분건수, 지도점검 건수 등

붙임: 공중위생업소 현황(2016.1.1. 현재) 1부. 끝.